

2025년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업

「2025년 경기도 로봇 실증 지원」 사업공고

경기도 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완료 후 실증화 단계에 있는 로봇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2025년 경기도 로봇 실증 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을 공모하오니 도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03월 10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일 ~ 11월
- 지원규모 : 과제별 최대 80,000천원(총 사업비 80%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로봇 관련 서비스 모델 확립 및 기술개발 완료 후 실증화 단계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
 - ※ 지원제외 세부내역은 기타 유의사항 확인
- 지원내용 : 수요 중심으로 실증, 상용화 등 로봇 현장 적용 지원

2. 사업 세부내용

□ 사업내용

- 경기도 내 로봇 활용, 상용화 및 사업화를 위해 세부 시험·실증 아이টে을 각 특성에 맞게 제안하고 실증 추진

□ 참여형태

- ① 로봇기업 단독 참여 : 주관연구기관 단독
- ② 로봇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참여 :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구성

□ 추진체계

- 로봇기업 단독 참여 : 주관연구기관 단독
- 로봇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참여 :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구성



< 컨소시엄 구성 예시 >

- 유형별 지원대상 세부자격 요건
 -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공고일(2025.03.10.)’기준

구 분	유 형	자 격	
주관 연구기관	기 업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설치·운영
			② 접수마감일(2025.04.08.) 기준, 경기도 내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참고1])
공동연구 기관	기 업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① ~ ④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② 경기도 내 ‘등록공장’ ③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④ 경기도 내 ‘연구개발전담부서’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연구 기관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비영리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위탁기관은 연구개발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위탁기간은 4개월 이내, 위탁연구
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한정

[참고1]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
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 지원내용

- 실증내용 : 물류, 의료, 제조 등 산업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활용가능한 로봇실증 주제
- 신청방법 : 일상 및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참신한 로봇실증 주제-아이템을 계획서 형태로 제출 ※ 제출 양식은 공고문 참고
- 지원내용 : 로봇과 연계한 시제품 개발비, 재료비, SW개발비, 수수료 등 사업비 지원 ※ 지원기업 기술료 부과 없음

□ 사업비 지원 세부 내용

- 지원 사업비(도지원연구개발비) : 총 3개 과제 지원, 1개 과제 당 사업비 최대 8천만원 지원 ※ 과제 종료 후 사업비 사용 대한 회계법인 정산 시행

《 사업비 구성 》

- 경기도 지원금(도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최대 80%까지 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도지원연구개발비외에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부담

[참고2] 연구개발비(사업비) 계상 예시(*도지원연구개발비 8천만원을 신청할 경우)

구 분	도지원연구개발비 (도 지원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합 계
		현금	현물	
계산식	80% 이내 도지원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0.8)	현금≥ (도지원연구개발비×0.10)	현물≥ 총 연구개발비-(도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금 액	80,000,000원	8,000,000원	12,000,000원	100,000,000원

○ 연구개발비(사업비) 신청 범위

- ※ 연구개발비 구성은 본 공고문 지원 내용에 한해 가능하며, 정산은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운영 요령 등 관련규정에 따름

구 분	사용 용도
시제품개발비	• 로봇과 연계한 통신, 인공지능, 센서, 콘텐츠 기술개발 등
재료비	• 부품 및 시제품 개조에 필요한 재료, 소모품
SW개발비	• 로봇구동 및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수수료	• 시제품 유지보수비, 인증관련 수수료, 특허 출원 및 등록, 회계감사비, 통신관련 공제세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총 인건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산정 ※ 그 외 인건비 산정 기준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준용
기타	• 유인물비, 홍보비, 문헌정보수집비, 기술개발관련 전문가활용비, 기술도입 및 특허정보 조사비, 국내여비

□ 사업 신청

○ 온라인 접수기간 : **2025. 03. 10(월) ~ 2025. 04. 08(화) 17:00 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에는 많은 인원의 서버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를 두고 지원 요망

○ 신청방법 : 제출서류 리스트 확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접수처 : 경기도R&D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회원가입 후 전산 제출

① 연구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공동연구개발 책임자 회원가입(필수)

- 접수 시,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 하여 입력·제출

② 온라인 과제관리 → 접수관리 → 신청서 → 등록

③ 분야별 공고 선택 → 기본정보 및 사업비 입력

④ 연구개발(실증)계획서, 제반서류 파일 압축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 모든 신청서류는 신청기관 직인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스캔본 업로드

※ 제출된 연구개발(실증)계획서 및 서류, 전산에 등록된 내용 등이 허위, 위·변도,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불가(단, 필요시 전문기관이 별도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제출

- 연구개발(실증)계획서 파일명은 ‘2025로봇실증_기관명’으로 저장
ex) 2025로봇실증_GBSA
- 제반서류 파일명은 ‘2025로봇실증_기관명_연번_서식명’으로 저장
ex) 2025로봇실증_GBSA_2_사업자등록증명원
- 필수서류 누락 및 공고일 이전 발급분 서류 제출 시 결격처리 되므로 제출 완료 여부 반드시 확인 (제출이후 내용 수정 불가)
- 파일이 누락된 채로 제출한 경우 결격 처리

○ 제출서류

연번	제출 서류	서식 및 참고	해당서류	
			필수	해당시
1	- 연구개발(실증)계획서 1부	『서식1』	○	
2	-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해당 시)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국세청 온라인 홈페이지 발급	공고일 (2025.03.10.) 이후 발급분	○	
3	-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해당 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각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홈페이지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	
4	-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해당 시)의 최근(2024년 귀속분) 회계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제출	영리기관(기업)에 한함	○	
5	-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해당 시) 기관대표,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의 NTIS 제한정보 확인서 각 1부(총 3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	
6	-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해당 시)의 전문 인력 4대보험가입 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7	- 주관연구기관의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서식2』	○	
8	- 주관연구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서식3』	○	
9	-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해당 시)의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사실(부존재) 여부 활약서 각 1부	『서식4』	○	
10	-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해당 시)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 확인 必	○	
11	- 주관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해당시)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각 1부	『서식5』	○	

연 번	제출 서류	서식 및 참고	해당서류	
			필수	해당시
12	-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해당시)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영리기관(기업)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	
13	-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해당시)의 서약서	『서식6』	○	
14	-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해당 시)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시		○
15	- 공동연구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7』	-	○
16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참고3] 참고	-	○
17	- 기타 성과 증빙서류 ※ 대용량 파일은 업로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용량 주의	지적재산권 등 보유기술 및 역량관련 증빙서류 사본		○

3. 사업수행 및 과제선정 절차

□ 사업수행 절차

○ 사업 추진 일정



※ 상기일정은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제 선정 절차

○ 사전검토(최소자격확인)

- 서류의 적격성, 지원자격의 적합성 등 적합성 검토

- 도내 소재 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공장등록증,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등

○ 서면평가

-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 연구개발(실증)계획서를 토대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중복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류심사(평가)를 실시한 후 실시한 후 발표평가 대상 선정(60점 이상)

※ 접수현황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으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사전검토’에 의거 제외 대상만 심의

○ 법 위반 여부 검토

- 공고일 기준 2년 내 11개 분야((1)공정거래법 (2)하도급법 (3)표시광고법 (4)근로기준법 (5)안전보건법 (6)폐기물관리법 (7)대기환경보전법 (8)소음진동관리법 (9)물환경보전법 (10)국세기본법 (11)지방세기본법) 중 법 위반 내역이 있는 기업은 발표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하여 최종점수 산정

적용법률		내 용
I 공정	① 공정거래법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
	② 하도급법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 균형발전
	③ 표시광고법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
II 노동	④ 근로기준법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기여
	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III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기여
	⑦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
	⑧ 소음진동관리법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
IV 납세	⑨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
	⑩ 국세기본법	국세,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 과세(課稅),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
	⑪ 지방세기본법	

○ 발표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중복성,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해 60점 이상의 과제 중 고득점 순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참고3] 가산점 적용 대상 및 기준

- 각 0.5점

- 경기도 사회적가치지표 우수, 탁월 기업(*측정연도 : 23~24년)
 -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확인서” 제출(우수, 탁월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행)
- 경기도 ESG진단·평가 우수기업(4등급 이상)
 - “ESG 진단평가 참여기업 확인서” 제출(4등급 이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발행)

- 가산점 적용 기준

- ① 가산점은 발표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적용
- ② 가산점은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를 제출한 주관연구기관에 한하여 적용
- ③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전산등록마감일[2025.04.08.(화)]을 기준으로 함

○ 과제선정

- 발표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경기도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 취소

4. 지원제한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 전산등록 마감일(2025.04.08.(화))기준,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장·연구책임자·공동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구분 없이 1개 기업이 **복수의 과제를 접수**하는 경우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분야)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연구개발(실증)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② 기 지원받은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이미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하고 있는 때는 사전지원 제외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 제외

⑤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5. 기타 공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기준에 따른 법위반 사실 조회
 - ※ 경기도 고시 제2025-23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 기존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이해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주관 및 공동)은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 포함하여 적용
- 발급수수료는 연구비(직접비-연구활동비)로 계상

□ 과제선정 취소

-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PMS(R&D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 하는 경우
 - 선정기관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선정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문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경기도 로봇 실증 지원사업 수행 신청자격(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지원기관 선정 후 과거 범위반사실 확인 시 보조금 반환, 사업 선정 취소하고 추가 패널티 부여(3년간 참여제한)

□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연계 (필수)

- 연구비는 범부처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을 통하여 가상 계좌로 교부되며, 선정기업은 RCMS 연계 가능한 참여은행의 계좌 및 법인카드(사업비전용카드)를 필수로 사용해야 함

□ 연구비 부정사용 시 제재

○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시 제재부과금 부과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9조 등에 의거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

○ 연구부정행위자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기타사항

○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적극 협조해야함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지원금은 2회 이상 분할 지급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등을 적용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편람」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름

6. 문의처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신산업팀

구 분	해당부서	e-mail	연락처
2025 경기도 로봇 실증 지원	미래신산업팀	haneuri95@gbsa.or.kr	031)776-4832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을 활용 바랍니다.

서식 1. 연구개발(실증)계획서

2.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및 이중수혜 금지 서약서
3.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6. 서약서
7. 공동연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별첨 1. 연구개발(실증)계획서 작성 요령

2. 산업기술분류표
3.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참고

평가기준

□ 서면평가

기준	평가내용	평가점수
사업 계획의 적정성 (40)	사업 목표 및 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구체성	10
	사업의 수행능력(총괄 책임자의 능력, 기업의 관리·지원 능력 등)	10
	사업비 및 사업기간 구성 및 산출의 적정성	10
	사업 추진체계의 적합성	10
기술능력 (30)	보유 기술 및 로봇 개발 역량의 우수성	20
	실증 및 상용화에 따른 활용 가능성, 효과	10
중복성 (30)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 및 차별성(중복성 여부)	30
총 점		100

□ 발표평가

기준	세부기준	평가내용	평가점수
계획의 적정성 (20)	사업이해도 및 목표적정성	수행목표와 내용 이해도(실증 및 상용화 가능여부) 사업목표, 범위, 추진전략 등 도달 가능한 성과지표 제시 제안의 특징과 과업 수행역량	10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준비도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및 마케팅 등의 타당성	10
기술성 (30)	기술의 혁신성과 개발능력	보유기술(제품, 서비스 등)의 국내외 기존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기술적 우위, 범위, 경험 등)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유능력 및 구성력 - 해당 분야 기술개발 및 실용화 실적, 참여 인력의 운영 능력과 역할 분담, 전공, 구성력 지적재산권 등 기술확보 체계 보유여부	10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전략	개발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개발 의 연계성 및 적합성	10
	기술적 파급 효과	실증을 통한 기술개발 확장성 사업화 연계성 및 산업발전 효과 등	10
사업성 (30)	실용화(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개발 결과의 실용화 가능성 개발 결과의 상업화 소요기간 및 난이도를 고려 시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시장 규모에 따른 향후 성장성 사업화 추진전략의 현실성 및 구체성 보유여부	20
	시장 영향	상용화에 따른 시장 영향 및 파급효과	10
사업비 구성 및 지원 적정성 (20)	도비 지원의 필요성	도 혁신주체가 자립적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적, 창의적 사업으로 도비 지원의 필요성 경기도의 산업 기반 구축 지원 공헌도	10
	사업비의 구체성	사업 목표 대비 사업비 구체성	10
총 점			100